



노스캐롤라이나주
평가위원회

의제:

고위당국결정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사례진술 :

원고는실업보험혜택에대한새로운클레임 (NIC)을유효하게제출했습니다. 그후,고용안전부(“Division”)는원고에게지불할주 간혜택이\$임을결정하고, 원고가설정한수혜기간동안원고에게지불할수있는실업보험혜택의최대금액은\$ 임을결정하였습니다.

이클레임은마지막취업에서의퇴직문제에대한판결에회부되었습니다.판결자는 N.C. Gen. Stat. § 96-14()에의거하여일,원고가혜택을받기에(실격이라는) (실격이아니라는)서류번호의판결자결정을내렸습니다. (원고) (고용주)는이결정에대한항소를제기하였으며,이문제는항소번호에따라항소심판 (이름)에게제출되었습니다.다음과같은개인들이청문회에서항소심판앞에출석하였습니다 : 일,항소심판은 N.C. Gen. Stat. § 96-14.()에따라원고가실업보험혜택을받기에실격이 (아니)라는결정을내렸습니다.(원고) (고용주)가항소하였습니다.

발견한사실 :

1. 원고는부터까지의기간동안지속적인클레임을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본부와함께 일신청을했으며,본부에서요청한대로취업사무실에보고를계속하고,N.C. Gen. Stat. § 96-15(a)에따라혜택클레임을신청하였습니다.

2. 일부터원고는로서고용주를위해일하기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녀는)일고용주를위해마지막으로일하였습니다.



고위당국결정번호
4 페이지 중 2

법의규정: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고용안전법은 본부가 개인이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퇴사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혜택을 받기에 실격이라고 규정합니다. 개인이 퇴사할 때,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정당한 사유를 보여주는 부담은 개인에게 달려있으며, 이 부담은 고용주에게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N.C. Gen.Stat. §96-14.5(a).

“정당한 사유”란 합리적인 남성과 여성으로 인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일하기를 꺼리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사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법원에 의해 해석됩니다. Sellers v. Nat'l Spinning Co., Inc., 64 N.C.App. 567, 307 S.E.2d 774 (1983), disc. rev. denied, 310 N.C. 153, 311 S.E.2d 293 (1984); Clark, 47 N.C.App. 163, 266 S.E.2d 854 (1980)의 법적 케이스에서. “고용주에게 귀속되는”이란 고용주의 행동에 의해 일어나거나, 발생하거나, 생성되거나, 결과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Sellers, 64 N.C.App. 567 를 참조하십시오 ; Vinson, 42 N.C.App. 28, 255 S.E.2d 644 (1979) 의 법적 케이스에서. N.C. Gen. Stat. § 96-14.5(a)에 의거하여 원고는 그(녀)가 혜택을 받기에 실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부담을 가집니다. Whicker, 56 N.C.App. 253, 287 S.E.2d 439 (1982) 의 법적 케이스를 참조하십시오. 이 부담을 지지 않았을 때, N.C. Gen. Stat. §96-14.5(a)는 원고가 혜택을 받을 자격을 박탈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업보험급여에 대한 분쟁 클레임을 포함하는 경우 사실의 이슈를 전달할 때 평가위원회 (“Board”)는 증인의 신빙성 및 증언에 부여되는 무게의 궁극적 판사입니다. 위원회는 오로지 믿는 가 믿지 않는 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증인의 증언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Moses v. Bartholomew, 238 N.C. 714, 78 S.E.2d 923 (1953); Phillips v. Kincaid Furniture Co., 67 N.C.App. 329, 313 S.E.2d 19 (1984).

법의결론:

현재의 경우, 청문회에서 제시된 적합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에 근거하는 사실의 발견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증거가 해결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적합하고 믿을 만한 증거 및 발견된 사실들을 통해 원고는 법의 의미 내에서 퇴사했다는 사실을 결론지었습니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합리적인 남성과 여성은 원고의 퇴사이유가 N.C. Gen. Stat. § 96-14.5(a)의 의미 내에서 직장을 떠나는 정당한 사유의 수준까지 상승(했음) (하지 않았음)에 동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 위원회는 원고가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정당한 사유(와 함께) (없이) 직장을 떠났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항소심판의 결정은 (확인되어야/ 뒤바뀌어야/ 수정되어야) 하며, 원고는 N.C. Gen. Stat. § 96-14.5(a)에 따라 혜택을 수령하기에 (실격이) (실격이 아니)어야 합니다.

결정:

항소심판의 결정은 (확인되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원고는부터실업보험혜택에대해**실격**입니다.
(실격이아니며부터실업보험혜택을받을것입니다.

고위당국결정번호
4 페이지중 3

평가위원회의의원 Fred F. Steen, II 및 Stan Campbell 이항소에참여하여이결정에동의합니다.

이.

평가 위원회

위원장

주의:이 고위 당국 결정은 법원의 재심을 위한 청원이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우편 발송 후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우편 발송 날짜는 이 결정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고위 당국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동봉된 팸플릿을 참조하십시오. 해당팸플릿은 주 전역의 공공 고용 사무소 및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는 www.des.nc.gov 를 통해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여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심사를 위한 항소 권리

이 고위 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는 청원자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또는 청원자의 주된 사업 장소가 있는 카운티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스 캐롤라이나 주 어느 카운티에도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항소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 웨이크 카운티의 또는 논쟁이 일어난 노스캐롤라이나 카운티의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은 N.C. Gen. Stat. §§ 96-15(h) 및 (i)에 의거하여,법원의 검토를 위한 청원서가 적시에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된 사법 심사 청원서 사본은 청원 접수 후 십 (10)일 이내에 고용 안전부 ("Division") 및 소송에 기록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개인적 서비스 또는 공인 우편으로 송달 받아야 하며, 수령 확인이 요청됩니다.고등 법원 검토를 위한 청원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업무 처리를 위해 등록된 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A. John Hoomani
Chief Counsel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우편 주소: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실제 주소: 700 Wade Avenue, Raleigh, NC 27605-1154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고위 당국 결정 번호



주의:귀하가 다른 당사자의 사법 심사 청원서를 받은 경우,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심사 절차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심사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원서를 받은 후 십 (10)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2) N.C. Gen. Stat. § 1A-1, Rule 24 에서 제공된 것과 같이 개입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 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N.C. Gen. Stat. § 96-18(g)(2).

원고에 대한 특별 통지: 귀하가 근본 클레임에 관련하여 실업 보험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이전에 받았고,이 고위 당국 결정이 그러한 혜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귀하를 부적격 또는 실격으로 규정하는 경우,귀하는 N.C. Gen. Stat. § 96-18(g)(2)에 의거하여 혜택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 고위 당국 결정에 의해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귀하는 해당 부서의 혜택 무결성 / 혜택 지불 통제 섹션으로부터 초과 지급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별도의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초과 지불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귀하의 초과 지급 액수와 적용되는 처벌을 명시 합니다.귀하가 초과 지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그리고 노스 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이 고위 당국 결정의 사법 검토 청원을 제기하는 것뿐임을 알려드립니다.귀하의 청원서에서,귀하는 항소가 (1) 실격 또는 자격의 문제 및 / 또는 (2) 귀하가 초과 지급을 받았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결정 전달: